

[별표1]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

장기요양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본인부담률
월 한도액	1,498,300	1,331,800	1,276,300	1,173,200	1,007,200	일반 대상자: 15% 의료 대상자: 6% 경감 대상자: 6%또는 9% 기초생활수급자: 0%

[별표2]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분 류	금액(원)
30분 이상	14,530원
60분 이상	22,310원
90분 이상	29,920원
120분 이상	37,780원
150분 이상	42,930원
180분 이상	47,460원
210분 이상	51,630원
240분 이상	55,490원

[별표3]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

서비스 제공시간	금액(원)
18시 이후 22시 이전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20%를 가산
22시 이후 06시 이전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30%를 가산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정한 공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	

[별표4]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74,47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67,15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1,930원

[별표5]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분 류	금액(원)
30분 미만	36,110원
30분 이상 ~ 60분 미만	45,290원
60분 이상	54,490원